

2026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

2025.12.



목 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26년 통합재가서비스 변경사항
02. 급여계약 업무처리절차
03. 급여계약 전산 등록 방법
04. 다빈도 질의사항



01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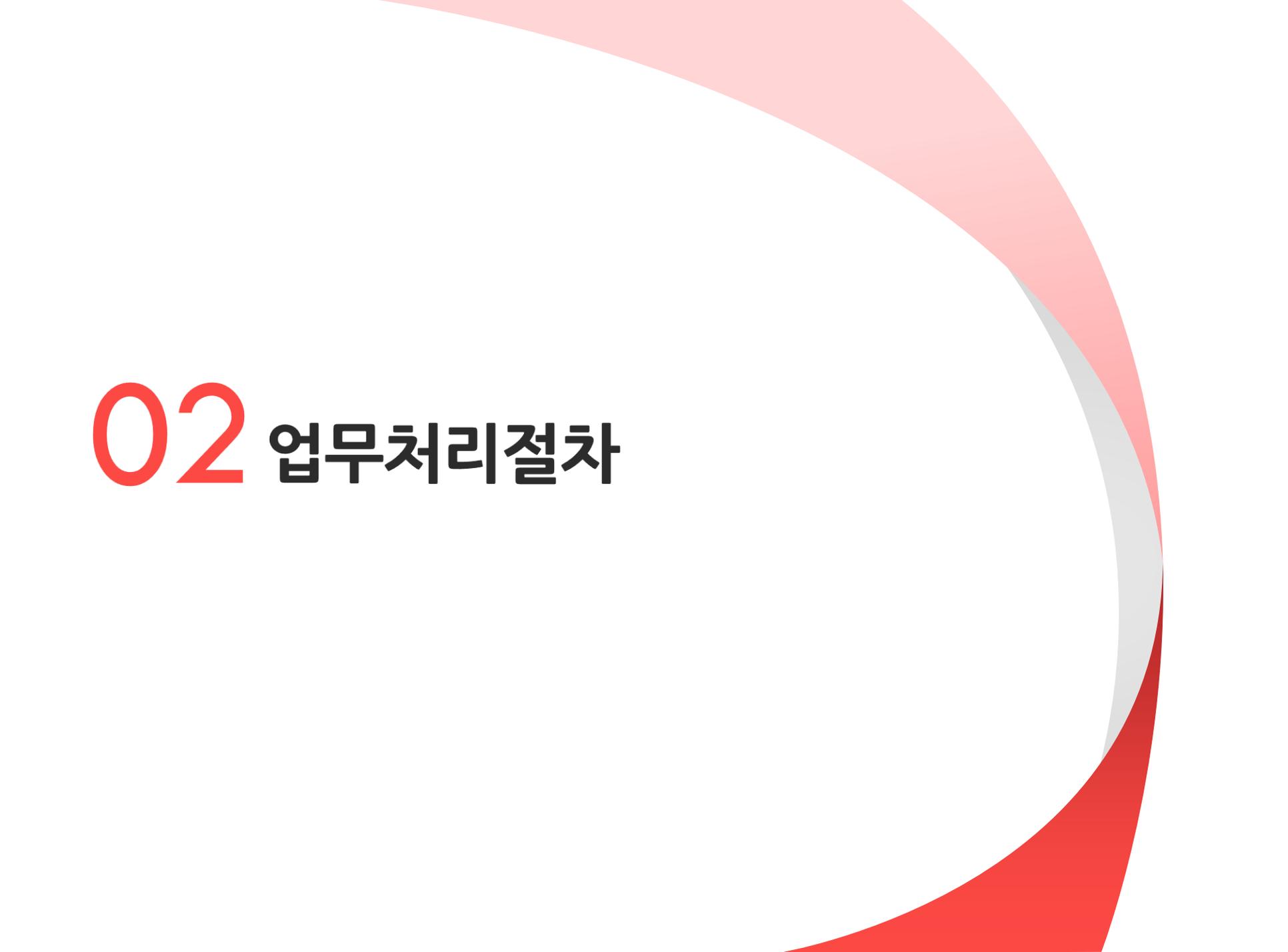
통합재가서비스 안내



■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개편 전·후 비교

구분		2025.3.~12. (월정액)	2026.1.이후 (新수가)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제외) 인지지원등급, 의료급여수급권자, 치매전담실 및 가족요양 이용 수급자 등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치매전담실 이용자 * (제외) 인지지원등급, 가족요양 이용 수급자 등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급여종류가 있는 경우 재작성 불필요	좌동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 필요
급여 계약	계약서	통합재가서비스 계약서 사용 권고	급여종류별 표준계약서 사용 단, 통합재가서비스임을 별도 표기
	계약 등록	급여종류를 통합재가서비스로 등록	급여구분(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 선택 후 급여종류별로 등록
급여제공계획서		공단 승인 필요	삭제

02 업무처리절차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 ... ‘계약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할 사항’

- ① 하나의 기관(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여러 개의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임을 설명
- ② 필수요건* 충족 시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가능
 - * (필수요건) 1개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해당 월에 방문요양 4회 이상 ⊕ 방문간호 2회 이상 ⊕ 월 한도액의 80%이상 급여 이용
- ③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 월 중 통합재가서비스가 아닌 다른 급여(타기관 재가급여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불가
 - 월 중 가족 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불가

업무처리절차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

서비스 유형	계약 가능한 급여종류		필수 요건
가정방문형	필수	방문요양 방문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요양 4회 이상 ⊕ 방문간호 2회 이상 ⊕ 월 한도액의 80%이상 급여 이용 ▪ 주·야간보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요양 1회 이상 ⊕ 주·야간보호 1회 이상 ⊕ 월 한도액의 80%이상 급여 이용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는 같은 기관 또는 타 기관 모두 급여제공 가능(월 한도액 미포함) - 단,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는 반드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계약한 방문요양으로 급여제공해야 함 ※ 타기관에서 종일방문요양 급여계약 및 일정등록 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불가
	선택*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	
주·야간보호형	필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는 같은 기관 또는 타 기관 모두 급여제공 가능(월 한도액 미포함) - 단,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는 반드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계약한 방문요양으로 급여제공해야 함 ※ 타기관에서 종일방문요양 급여계약 및 일정등록 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불가
	선택*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	

* 선택: 해당 기관에서 선택 가능한 급여종류를 선택

업무처리절차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시 유의사항

- (동일기관)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 시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A기관)

A 장기요양기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A 일반 재가급여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A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X

- (복수기관)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 시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A, B기관)

A 장기요양기관	B 장기요양기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일반 재가급여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X

업무처리절차



■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 시 높은 월 한도액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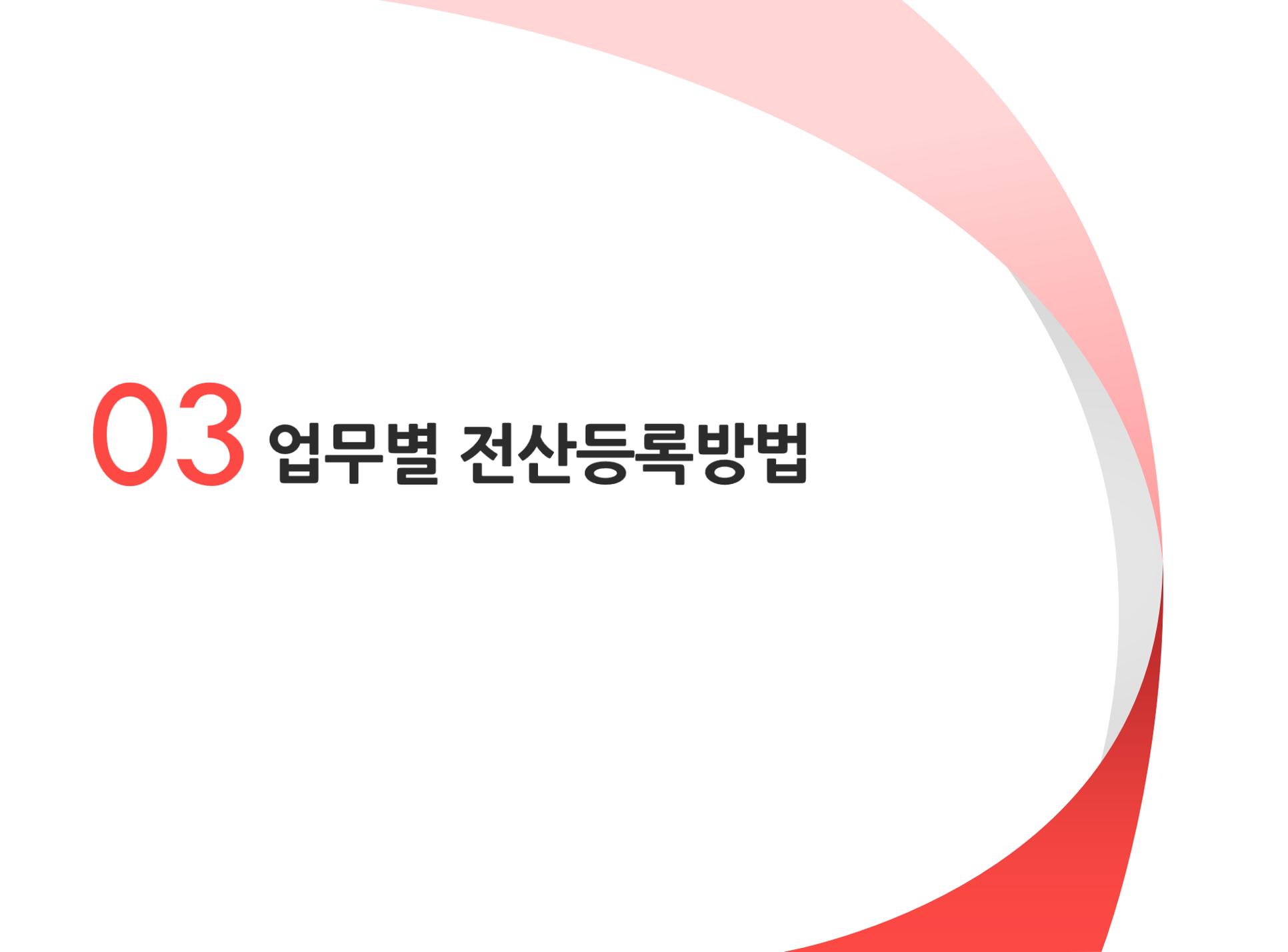
① 월 중 등급 변경 시 높은 월 한도액 적용

② 월 중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8시간 이상(1일) x 15일(월) 이상 제공한 경우,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에 따라 110~150% 추가 산정

인정등급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적용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등급	110%	X
2등급		
3~5등급	120%	150%



03 업무별 전산등록방법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통보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npia101m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닫기

1 **신규등록** 갱신등록 추가등록 수급자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L-

인정등급 인정유효기간 입력 저장

2 3

급여종류

기관유형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구분 급여종류 적용등급

통합재가서비스의 경우 아래의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재가서비스의 (통)가정방문형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통)주야간보호형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반드시 계약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4

계약자 및 계약내용 불러오기 내용수정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자택)

전화번호(핸드폰) 계약일자

계약기간

주소

- ① 신규등록 으로 인정서를 확인하여 수급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갱신등록 · 추가등록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급자를 선택
- ②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구분 에 (통)가정방문형 또는 (통)주야간보호형을 선택
- ③ 급여종류 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급여종류를 선택 (요·목·간·주·단)
- ④ 계약자 및 계약내용 의 빈칸에 맞는 내용을 작성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통보 시 반드시 **급여구분** 을 선택해야 하며,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급여종류** 를 각각 급여계약통보 하여야 함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통보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급여계약통보서 확인

□ 계약내용 **1** 계약통보서이력조회

NO	삭제	계약일자	계약자성명	계약자전화번호	수급자명	수급자인정번호	SEQ	인정유효기간	계약기간	급여구분	급여종류

①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시 **(통)가정방문형 또는 (통)주야간보호형**을 선택하면 계약내용 의 급여구분에 통합재가서비스 계약내용 이 확인됨

□ 입소이용의뢰서 통보내역 **2**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접수일자	승인일자	승인기간	급여종류	승인금액	발급보장기관	관할보장기관	삭제여부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수급자는 **입소이용의뢰서 통보시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급여를 시·군·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드시 '통합재가서비스로 작성·발급' 받아야 함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급여제공계획서 npba410m01 급여계약통보서>급여제공계획서

장기요양관리번호 [L-] 급여계약일 -- ~ -- 급여종별 전체 급여계약 유효 통보 지연건 • 수급자(그 가족)동의여부 전체

수급자명 급여제공계획서 미통보자 급여제공계획서 1년 경과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건

급여제공계획서 내역 2

1	장기요양 관리번호	생년월일	급여구분	급여종류	급여 계약일	계약 시작일자▲	계약 종료일자	인정유효기간	작성일	제공계획 통보일	적용기간	급여제공계획서 번호	등급	열람 동의 여부	열람 가능 여부	동의 여부	동의방법	수급자 동의정보			
																		전자동의 최종요청일	동의일자	동의자명	관계
<input type="checkbox"/>			(통)가정방문형	방문요양	2025-11-26	2026-02-01	2026-05-31	2024-02-25~2027-02-24	2025-11-27	2025-11-27	2026-02-01~2026-05-31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1-27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가정방문형	방문간호	2025-11-26	2026-02-01	2026-05-31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02-01~2026-05-31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가정방문형	방문요양	2025-12-01	2026-06-01	2026-10-10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06-01~2026-10-10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가정방문형	방문간호	2025-12-01	2026-06-01	2026-10-10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06-01~2026-10-10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2025-12-01	2026-06-01	2026-10-10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06-01~2026-10-10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주야간보호형	방문요양	2025-12-01	2026-10-11	2026-12-31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10-11~2026-12-31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input type="checkbox"/>			(통)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2025-12-01	2026-10-11	2026-12-31	2024-02-25~2027-02-24	2025-12-01	2025-12-01	2026-10-11~2026-12-31		4등급	N	Y	직접동의		2025-12-01		본인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구분에 (통)가정방문형 또는 (통)주야간보호형으로 표기 예정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할 ① 수급자를 선택하고 ②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버튼 눌러 입력 활성화
- 급여제공계획서 내역 → 급여제공계획서 이력 → 필요내용 작성 → 목표주기 작성 →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탭 순서대로 입력·저장하고 공단 통보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내역'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managing benefit provision plans. A modal window titled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정보 조회 [npba410p01]' is open, displaying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NO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번호	인정유효기간	출력일자
1	101 001	2024-02-25~2027-02-24	2024-01-24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1' is placed over the first row of this table. Below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for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with a table that has columns for 'NO', '급여종류', '시작일자', '종료일자', and '작성사유'. The first row in this table is highlighted in yellow and contains the text '방문요양'.

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불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종류'에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급여종류'가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함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일정등록

- 화면경로: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npi103m01

급여계약통보서 초기화 저장 인쇄 닫기

• 계약년도 유효 • 계약기간 ~ • 급여종별

• 수급자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인정번호

계약내용										월별내역		
성명	등급	생년월일	급여구분	급여종류	계약일자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최종급여 제공일자	비급여 항목없음	년월▲	횟수	총금액
	4등급	1960-12-31	(통)가정방문형	방문요양	2025-11-26	2026-02-01	2026-05-31	2026-05-26	<input type="checkbox"/>	2026-02	0	0
	4등급	1960-12-31	(통)가정방문형	방문간호	2025-11-26	2026-02-01	2026-05-31	2026-05-11	<input type="checkbox"/>	2026-03	0	0

- 통합재가서비스로 계약한 경우 '계약내용' 목록에 (통)가정방문형 또는 (통)주야간보호형으로 확인 가능
- '계약내용' 목록 우측의 '월별내역'에 '급여계약내용 등록' 내역 확인 가능
- 매월 말 또는 청구 직전 '전체 월금액 재산정'을 통해 수급자의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여부 확인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일정등록

- 화면경로: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npia107p01]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방문요양) 저장 및 통보 닫기

• 년월 2026년 5월 • 대상자 - 방문요양 조회

□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해지 월금액 재산정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4-02-25 ~ 2027-02-24 계약기간 2026-02-01 00:00 ~ 2026-05-31 15:50

□ 급여일정등록-변경 ※ 급여일정 종료시간이 익일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급 이후 통보

삭	요양요일	프로그램 관리자	가족 여부	가족 휴가제	동시 제공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삭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00	11:00	120분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비스내용입력 상태																																						
삭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00	24:00	900분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비스내용입력 상태																																						
삭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00	17:00	180분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비스내용입력 상태																																						

▪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 $\frac{\text{통합재가 월금액 합계 금액}}{\text{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

이용횟수	인지활동형	횟수	타기관포함	인지활동형	가족휴가제	이용일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17	0	0		0	1		981,340 원	1,359,390 원	1,370,600 원	0 원	390,520 원	56%

□ 계약통보서 해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급여일정을 등록하여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클릭하여 급여계약내용 등록 → 공단 통보 전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 '저장 및 통보'
- 통합재가서비스로 계약한 '급여종류별로 급여계약내용 등록' 하고 '급여종류별로 통보'
- 통합재가서비스 급여계약내용 등록 화면 내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확인 가능
→ 해당 월 수급자 등급별 월 한도액(100%) 대비 통합재가서비스 월금액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일정등록

- 화면경로: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

(기관포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화면

급여계약내용 등록(추가) [npia107p01] ※ 중복 점검은 저장 및 통보시 수행됩니다.(방문간호) 저장 및 통보 닫기

년월 2026년 5월 • 대상자 [redacted] - 방문간호 조회

□ 장기요양대상자 계약통보서 해지 월금액 재산정

성명 [redacted] 장기요양인정번호 [redacted]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4-02-25 ~ 2027-02-24 계약기간 2026-02-01 00:00 ~ 2026-05-31 15:50

□ 급여일정등록변경 확장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급 이후 통보

삭제	요양요원	가족 여부	건강관리 서비스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삭제	[redacted]	N	<input type="checkbox"/>	1800	1900	60분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비스내용입력 상태																																							

이용횟수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3	188,790 원	1,359,390 원	1,370,600 원	0 원	390,520 원	56%

□ 계약통보서 해지 ※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으로 급여일정을 등록하여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 산정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금)	(토)	(일)	(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등급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자격	일반	일반																																			
해지여부	<input type="checkbox"/>																																				
해지시간																																					

급여계약 전산등록방법



■ 통합재가서비스 일정등록

- 화면경로: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

※ 중복 점 (통)가정방문형 방문요양

• 년월 2026년 5월 • 대상자 방문요양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4-02-25 ~ 2027-02-24 계약기간 2026-02-01 00:00 ~ 2026-05-31 15:50

급여일정등록-변경 확장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금 이후 통보

※ 급여일정 종료시간이 익일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삭제	요양요원	프로그램 관리자	가족 여부	가족 휴가제	동시 제공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00	11:00	120분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00	24:00	900분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00	17:00	180분	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용횟수	인지활동형 횟수	타기관포함 인지활동형	가족휴가제	이용일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17	0	0	1		981,340 원	1,359,390 원	1,370,600 원	0 원	390,520 원	56%

➔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급여계약내용을 등록!

▪ 방문요양

- 120분 x 8회

- 180분 x 8회

- 900분 x 1회(0.5일)

- (월금액) 981,340원

▪ 방문간호

- 60분 x 8회

- (월금액) 188,790원

※ 중복 점 (통)가정방문형 방문간호

• 년월 2026년 5월 • 대상자 - 방문간호 조회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인정번호 L2201130192 자격 일반 인정유효기간 2024-02-25 ~ 2027-02-24 계약기간 2026-02-01 00:00 ~ 2026-05-31 15:50

급여일정등록-변경 확장 방문간호지시서 등록 입력 지난일정 수정 지난일정 수정이력 인쇄 인쇄(달력) 지금 이후 통보

삭제	요양요원	가족 여부	건강관리 서비스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공 시간	횟수	전체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	<input type="checkbox"/>	1800	1900	60분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용횟수	월금액	타급여포함 월금액	월 한도액	월한도 초과금액	월한도 미포함금액	통합재가 월금액 비율
3	188,790 원	1,359,390 원	1,370,600 원	0 원	390,520 원	56%

급여계약 전산 매뉴얼



■ 급여계약 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 화면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계약통보서 > 게시판 > '자료실'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 원격지원요청 | 도움말 | 환경설정 | 로그아웃 | 사이트맵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 급여계약통보서 | 복지용구계약 | 가산및감액산정 | 급여비용청구 | RFID | 지급관리 | 기관평가 | 급여제공관리 | 급여제공서식 | 서비스모니터링

자료실 nptz703m01

급여계약통보서>게시판

검색구분: 제목 | 검색어: | 조회

자료실 : 급여계약 유형, 장기요양기관 사용자

게시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조회수
20	[공지]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	관리자	2025-05-21		41,579
18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관리자	2024-11-21		22,474
17	(2022) 급여계약통보서 관련 교육자료 게시	관리자	2024-01-08		23,537
15	상호협력동의서(예시) - 급여계약시 활용	관리자	2022-12-28		25,607

조회결과 4 건

자료실 상세정보

제목: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 게시기간: 2024-11-21 ~ 2027-12-31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5-21

- 급여계약 전산업무는 기관포털 급여계약통보서 메뉴 내 -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참고'

※ 자료실 게시글 번호 18번 참조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 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04 다빈도 질의사항



Q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면 모든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 아니오. 모든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만 급여계약(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표기)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가정방문형 또는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에서 제공해야하는 필수 급여만 제공하여야 하나요?

- 아니오.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해야하는 급여종류 이외에도 수급자의 욕구와 기능상태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급여종류는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통합재가서비스로 급여계약 및 급여계약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유형 (급여구분)	필수 제공	선택 제공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요양	해당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Q3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네. 통합재가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급여종류별로 급여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공단에 '통합재가서비스의 유형 + 급여종류의 급여계약' 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급여계약서에 통합재가서비스 유형을 별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3조(급여범위),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에 별도 표기

Q4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중 '수급자 희망급여' 가 통합재가서비스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 아니오. 제공하려는 급여종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발급 받아야만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Q05

통합재가 수급자가 월 중 계약 종료 후 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다만,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외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위 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 전 안내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제10항제2호

Q06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월 중에 계약 변경 및 급여일정을 등록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월 한도액 추가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월 중 급여계약 및 급여일정을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가정방문형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기보호급여에서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외)

※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제10항제2호, 3호

다빈도 질의사항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가정방문형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유의사항>

- (동일기관)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 시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A기관)

A 장기요양기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A 일반 재가급여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A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X

- (복수기관) 월 중 급여계약내용 변경 시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A, B기관)

A 장기요양기관	B 장기요양기관	월 한도액 추가 산정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일반 재가급여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X
A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 B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	X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